

전남·광주체육회, 실업팀내 인권침해 조사



전남도체육회는 지역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설 '전남스포츠인권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 가능’ 온라인 사이트 개설 추진

인권유린 신고 등 인권우편함 설치해 운영

스포츠팀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광주체육회가 지역 실업팀을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지

역의 실업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폭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지역에는 축구, 육상, 하키, 볼링, 역도, 유도 등 21종목 34개팀 340

여명의 선수가 실업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위계질서를 잡기 위해 선수들간 폭력 등이 행사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감독과 선수들간 성추행,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스포츠인권센터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당사자들을 분리조치하고 비공개 심층 조사를 벌여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제보를 강화하기 위해 익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또 인권유린 등 비위행위에 대해 수시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인권우편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인권센터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도 병행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종목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기 위해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실업팀을 상대로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도자와 선배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자유롭게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지난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체육회장들이 흥기 폭력과 갑질 행위를 저질러 구속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김정환기자

술 마시고 7시간 뒤 추돌사고 60대 ‘신고유예→벌금형’

음주 직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출근 시간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19년 10월 19일 오전 7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500m가량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SUV를 뒤에서 들이받아 SUV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전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했고,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7시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주차 차량을 충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최종 음주 이후 7시간 뒤 운전했다더라도 전혀 운전할 만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 아파트서 라면 끓이다 불...1명 연기 흡입

15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14층 A(31)씨의 집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웃 3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라면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소방본부, 대형 다중이용시설 15곳 불시 교차단속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6일까지 판매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소방서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방화시설 유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불시 점검을 통해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로 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이다.

단속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병오염방지를 착용한 채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은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주 속이고 상습적으로 선불임금 가로챈 50대 구속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주들을 상대로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선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선원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께 강화군 삼산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B호에 승선해 일을 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2명의 선주로부터 총 1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주들을 상대로 “임금을 선금으로 주면 배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연안어선 선주들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임금을 선불로 주고라도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A씨는 2018년도에도 같은 사기행각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반복적인 사기행각으로 선주들로부터 선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꿔 사망사고 유발, 1심 무죄→2심 유죄

옆 차로 운전자, 급차선 변경 차량 피하다 구조물 충돌 숨져

재판부 “진로변경 주의 의무 위반한 과실로 사망 이르게 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실로 비접촉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모 LPG 충전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다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

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를 피하려다 구조물 충돌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B씨 차량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A씨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한 뒤 뒤집히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엔진 부분 덮개(보닛)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의 과실로 B씨의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한 B씨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내용, 사고 관련 영상,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A·B씨의 차량 간 거리는 6.5m로 보인다. A씨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길어도 0.585초에 불과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 모습도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이 A씨 차량의 좌측 뒤편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사정을 더하면, B씨는 A씨의 차로 변경으로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왼쪽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조향 능력을 상

실, 주변 구조물 등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B씨의 순간적인 조작 미숙 등 피해자 과실이 개입했다면 가정해도 사망에 이르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B씨 차량이 A씨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장은 사고 관련 영상에서 차로 변경 여부가 식별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 또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